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(金成泰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319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8. 4. 23.

발 의 자 : 金成泰 · 김영우 · 박성중
이만희 · 신보라 · 송희경
홍철호 · 원유철 · 강석진
정갑윤 · 성일종 · 최교일
이은권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인터넷 댓글 여론조작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, 현행 법은 가짜뉴스, 매크로 임의 조작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조항이 전무한 실정임.

이에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못할 목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인터넷언론 댓글조작 시 가중 처벌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선거에 부적절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온라인 상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52조의2 신설).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52조의2(특정 게시글 조작 등의 죄)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종업원 수, 이용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「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의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제공하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뉴스서비스 게시글(이하 “특정게시글”이라 한다)을 작성하거나 조작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신 설></p>	<p>제252조의2(특정 게시글 조작 등의 죄)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종업원 수, 이용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「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의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제공하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뉴스서비스 게시글(이하 “특정게시글”이라 한다)을 작성하거나 조작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/p>